

第 19 回 臨時會

2005. 9. 29(木)

檢 討 報 告 書

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檢 討 報 告

□ 提案背景

- 하수관거 노후화 및 불량화로 불명수, 침입수 유입에 따른 유입량 증가로 효율저하 및 방류수역 수질악화를 예방하고
-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의 체계적·경제적·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
-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용량 확보를 위한 배출오염원삭감계획인 「수질오염 총량관리제」에 대비하고자 함.

□ 主要内容

1. 의무부담 내용

- 의무부담액: 39,257백만원(국비70%, 시비 30%)
- 채 권 자 : 사업시행자(민간 투자자)
- 의무부담자 : 주무관청(계룡시)
- 상환방법 :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

2. 사업 내용

- 사업기간 : 2005년 ~ 2008년 (추정공사기간 32개월)
- 사 업 량 : 오수관로 신설 및 개보수 39.18km

배수설비 751가구,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1식

- 사업지역 : 계룡하수처리구역내 두계처리분구
(금암동, 남선면, 두마면 일원)

3. 추진방식

- 정부고시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
- BTL(건설-이전-임대)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익년도 부터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 상환
-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, 충남도, 주무관청, 환경관리공단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추진

□ 檢討意見

- 본 안건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 제2호를 근거로 하는 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에 따른 의무부담에 대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,
- 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에는 여러 이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,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지켜볼 때, 계룡시의 사업신청에서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,
- 기존의 계룡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TL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